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교보증권(주)

2. 제재조치일 : 2026.7.2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· 기관주의, 과태료 260백만원
직 원 등	· 주의 3명, 조치생략 2명,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핵심(요약)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

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위험, 상품특성,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, 해당상품의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등을 포함한 핵심(요약)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,

교보증권(주)은 2021.5.10. ~2023.5.31. 기간 중 총 853개의 CFD 계좌를

개설하면서 개인인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할 핵심(요약)설명서를 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, 이에 개인인 투자자에 핵심(요약)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관련 법규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제7호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2호의3
3.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20조의2 제3항

(2) 비대면 CFD 계좌 관련 실명확인 의무 위반

「금융실명법」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증표·서류 등으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(이하 ‘실명확인’)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, 예외적으로 실명확인된 계좌(근거계좌)를 근거로 실명확인 없이 연결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근거계좌 외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제한됨에도,

2018.4.26. 교보증권(주) A부서 등은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실명확인된 종합계좌(근거계좌)에 근거하여 실명확인 없이 연결계좌를 개설할 때 동 연결계좌에서 근거계좌 외의 여타 계좌로 실명확인 없이 이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·운영하여

2018.8.29.~2023.5.25. 기간 중 비대면 CFD 계좌 중 355개 계좌에서 근거계좌가 아닌 여타 계좌로 약 190.2억원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관련 법규>

1. 「금융실명법」 제3조 제1항
2. 「금융실명법 시행령」 제4조의2 제1항